

고 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8-137호

**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**

1. 2009.02.06.일자 조합설립인가되고 송파구고시 제2013-82(2013.08.16.)로 사업시행인가된 송파구 거여동 181, 202번지일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 처리하고,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재생과(☎ 02-2147-2899)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02-6417-3886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8년 11월 8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81, 202번지 일대

3. 정비구역의 면적 : 98,453.70㎡

4. 사업시행자 :

1) 명 칭 :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강
신선)
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길 18 2층

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8개월
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3. 8. 16.

7. 변경사항 :

·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: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(기존)

→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8개월(변경)